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

제 정(2012. 11. 01. 지침 제23호)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9조 및「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」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 등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산업자문"이라 함은 한국교통대학교(이하"대학"이라 한다.)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(이하 "산업체 등"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(기술, 경영, 및 디자인 등) 지원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하다.
- 2. "산업교원"이라 함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(이하"자문"이라한다.)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산업자문료"라 함은 산업체 등이 자문을 받으면서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(이하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자문)

- ①대학의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.
- ②산업교원 또는 산업체 등은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시설 및 연구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4조(자문 계약)

- ①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은 자문신청서(별표 1)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의하여 자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산업자문계약(별표2)(이하"계약"이라 한다.)을 체결할 수 있다.
- 1. 자문목적
- 2. 자문범위 및 내용
- 3. 자문방법

- 4. 자문료
- ③자문을 실시한 산업교원은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 자문 결과보고서(별표 3)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자문 계약해지) ①산학협력단 또는 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산업교원이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- 2.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
 - 3. 자문료를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
 - 4.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6조(자문료 납부) ①산업체 등은 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산학협력단은 산업체 등이 납부한 자문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.
- 제7조(자문료 분배 및 지급) ① 자문료는 산업교원에게 90%를, 산학협력단에 10%를 배분한다.
 - ②납부된 자문료는 매년 6월말, 12월말에 정산하여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단, 별도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)
- 제8조(실적평가반영) 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「한국교통대학교 교원업적 평가규정」에 따라 승진임용 및 재계약임용시실적 등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한다.
- 제9조(기타사항) 산업자문 신청서, 산업자문 계약서 및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